
학생 봉사활동 규정



장훈고등학교

학생 봉사활동 규정

(2025.03.01. 시행)

창의인재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장훈고등학교 봉사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해 봉사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도록 하는 데 있다.

제3조(봉사활동의 개념) ① 자발적으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베푸는 활동이다.

② 경제적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베푸는 활동이다.

③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적 활동이다.

④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선행이 아닌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의도적 활동이며, 계획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지속적 활동이다.

제2장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제3조 (명칭) 학생 봉사활동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4조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계획, 실행, 평가를 위한 업무 협조로 교원 위원 5명으로 조직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창의인재부장으로 한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조직

직책	직함	임무
위원장	교감	업무 총괄
부위원장	창의인재부장	계획
교원위원	1학년부장	업무 협조
교원위원	2학년부장	업무 협조
교원위원	3학년부장	업무 협조
교원위원	창의인재부 기획	기록
교원위원	창의인재부 봉사 담당	실행

제5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학년 도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봉사활동 업무 경력 및 관련성 등을 고려한 학교장의 임명을 통해 충원한다.

제6조(임무) ① 위원장은 본교 학생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봉사활동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의 지도를 위해 봉사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 업무를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위원회는 학생 봉사활동의 인정 범위, 실적 확인자의 범위, 인정 시간의 범위 등을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별로 내실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역별, 학년별 발달 단계에 따른 교외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하고 원활히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한다.
3. 위원회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적절히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평가하며,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중 ‘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및 「학교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계획서와 확인서 또는 보고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타 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인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종합적으로 판단(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 (운영) ① 위원회는 학생 봉사활동 관련 제 지침과 지도 자료를 근거로 학교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또한 모든 봉사활동 내용 지침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우선 따른다.

② 학생 봉사활동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생 봉사활동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한다.

제8조 (소집) 위원회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제9조 (의사 결정 방법)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에 의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교무회의 심의)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교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의결정족수는 전체 교원의 1/2 이상으로 한다.

제3장 학생봉사활동 지도

제11조 (지도 방침) ①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과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휴업일인 경우 8시간을 인정한다.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토, 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중)
인정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③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 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한다.

제12조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①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하여 수업 시간 이외의 시간(일과 전·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며, 학년 초에 작성하는 학교교육계획서에 의하거나, 담당(담임)교사가 수시로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서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인정 대상 교내 봉사활동’은 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육청에서 예시한 활동에 한하며, 예시되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도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중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봉사활동」(자기주도적 프로젝트형 봉사활동)은 학생이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지정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담임(담당)교사의 사전 승인 및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고 봉사활동 실행 후 ‘봉사활동 보고서(지정 양식)’을 제출하여 해당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해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 평가받아야 한다.
- ⑤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준비, 실행, 평가를 거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준거로 편성한다.

제13조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에 따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① 「학교 교육 계획 이외의 봉사활동」은 학생이 사전에 ‘봉사활동 계획서(지정 양식)’을 작성, 제출하여 담임(담당)교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고 봉사활동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지정 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담임(담당)교사는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검토하여 봉사활동 인정의 기본 원칙(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 1일 8시간 이내(수업일에는 수업시간 포함하여 8시간 이내), 봉사활동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결로 처리하되, 학생들에게 거짓을 가르쳐 교육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학생들의 봉사활동 상황은 담임(담당)교사가 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기록표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① 봉사활동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담임(담당)교사가 사실 내용을 확인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기록한다.

② 봉사활동과 일반적인 선행 활동을 구별하여 일반적인 선행이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봉사활동 실적 확인용 서류는 당해 학생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제4장 규정 개정

제15조 (발의) 본 규정의 개정이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위원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의결) 본 규정의 개정은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6조 (심의)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효력 발생) 개정안은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장이 즉시 공고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제1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심의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 자로 시행한다.